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합5407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4. 9. 23. (피고 1., 2., 3., 5.)

2014. 11. 25. (피고 4.)

판결 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09,611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2013.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2014. 9.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55,206,2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155,206,2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12. 11.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E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9. 접수 제260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B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2. 21. 피보험자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공업'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2. 21.부터 2013. 2. 20.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 B,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며, ②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5%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쌍용양회공업은 2012. 12. 18. 원고에게, 2012. 10. 31. 이후 피고 회사의 대금 지급 및 주문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1. 18. 쌍용양회공업에게 보험금 183,109,61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B와 피고 D는 2012. 9. 27.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6.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4. 2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피고 C와 피고 E는 2012. 11. 7. 피고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9.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3,109,61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3. 1. 19.부터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2013.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B는 2012. 2. 21.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2012. 10. 31.경부터 피고 회사가 쌍용양회공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③ 실제로 쌍용양회공업이 2012. 12. 18.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피고 B가 피고 D와 이혼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가, 피고 D가 대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갑 제9, 11, 13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D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부부사이였던 피고 B와 피고 D는 2004. 11. 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후 2008. 10. 20.경부터 2011. 1. 12.경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와 피고 D가 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긴밀하게 교류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 D는 피고 B의 채무관계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루어져 이례적이다.

③ 피고 B와 피고 D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3,500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2. 9. 30.에,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12. 11. 6. 등기 및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실제 매매대금을 2억 9,5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향후 매각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는 위 매매계약서상 약정된 날짜가 지나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인 2012. 11. 7. 피고 B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4. 22. 피고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한 형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 1억 9,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또한 피고 D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 B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소외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22.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8,793,737원이며,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2014. 11. 14. 3억 400만 원이었는데,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155,206,263원(3억 400만 원 - 148,793,7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55,206,26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 E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 99조를 적용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이지웅

판사장민하

별지